

청 주 지 방 법 원

제 1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5가합20015 유치권부존재확인 등
 원 고 1. ▼▼▼
 2. ■■■■
 피 고 ○○○
 변 론 종 결 2015. 10. 8.
 판 결 선 고 2015. 10. 2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플래카드 철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5은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플래카드를 모두 철폐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▲▲조경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2. 4.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소재한 모텔의 실질적인 소유자 ▼▼▼와 사이에 식재대금을 42,000,000원으로 정하여 위 각 부동산 일대에 햇살나무 880주 등 수목(이하 '이 사건 수목'이라 한다)을 식재하기로 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들은 2014. 10. 6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을 낙찰받아 같은 날 위 각 1/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 내지 4, 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 중 플래카드 철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

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,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고, 청구취지가 불특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,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플래카드에 대한 철폐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이 부분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.

3.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

원고들이,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된 이상 유치권의 객체가 되는 독립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, 피고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

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목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함에 대하여,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42,000,000원 상당의 식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수목에 터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관련 법리

1)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,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·증명하여야 할 것인바(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에서도 피고가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·증명책임을 부담한다.

2) 또한 민법 제256조는 "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는데,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'권원'이라 함은 지상권, 전세권,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다(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2다15955 판결,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다카9067 판결 등 참조).

다. 판단

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▽▽▽에 대한 식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엇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,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식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수목에 터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피

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고,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플래카드 철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,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판사	윤성목
	판사	이화송
	판사	구천수

목 록

1.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444-14 대 2008㎡
2. 같은 리 444-16 대 2293㎡. 끝.